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최 봉 환

2021년 7월 23일

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회규칙 제19호

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“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**“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”**를 **“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”**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각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	**제2조(구성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